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3. 1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2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3월 9일 제62회(임시회)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공우홍)

- 가. 폐지이유
 -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사항이 '96. 6. 29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28조 제3항에 규정하여 있으며,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법령에 유보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폐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본 안은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및 징수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96. 6월 이전까지 조례로 정하여 추진토록 되었으나 '96. 6. 29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이 전문개정되어 과태료부과사항은 동조 제3항으로 규정하고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폐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년월일 : 1999. 2. .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폐지이유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이 '96. 6. 29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면개정하여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28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법령에 유보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폐지

3. 폐지근거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관계)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